

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회관의 설치와 운영·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(안 제1조)
-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 (안 제2조 및 제3조)
- 장애인회관의 사용 (안 제4조 ~ 안 제7조)
-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 (안 제9조 및 제10조)
- 지도점검 및 사용허가 취소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, 관내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장애인회관의 위치 및 시설 (안 제2조 및 제3조)
 - 시설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단체의 사무공간 제공 및 회의실, 교육장 등의 사용을 규정함.
- 장애인회관의 사용 (안 제4조 ~ 안 제7조)
 - 장애인회관 사용 기간과 대상 단체 등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단체의 회관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
- 손해배상 및 운영위탁 (안 제9조 및 제10조)
 - 회관의 위탁에 관하여 근거 규정을 명시함
- 지도점검 및 사용허가 취소 (안 제11조 및 안 제12조)

다. 검토의견

- 장애인회관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,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을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장애인회관의 건립에 따른 재원 마련, 부지 설정 등 많은 과제가 발생되므로 사업 추진에 세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